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964호(號) 1930년(昭和 5) 3월 24일 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26호(號)

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(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)에 대하여 1930(昭和 5)년 4월 1일부터 다음 [左]과 같이 할인(割引)함.

1930(昭和 5)년 3월 24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- 1 품 명(品 名) 밤[栗]
- 2 발 역(發 驛) 동지철도선(東支鐵道線) 각(各) 역(驛), 길장철로(吉長鐵路) 하구대(下九臺)·길림(吉林) 간(間) 각(各) 역(驛), 사조철로(四洮鐵路) 정가둔(鄭家屯)·도남(洮南) 간(間) 및 정가둔(鄭家屯)·통요(通遼) 간(間) 각(各) 역(驛), 창춘(長春), 사평가(四平街), 단동(安東)
- 3 착 역(著 驛) 국선(局線) 및 연대선(連帶線) 각(各) 역(驛)
- 4 급종별(扱種別) 차급(車扱)
- 5 임 륜(賃 率) 원산(元山), 성진(城津), 청진(淸津) 및 부산(釜山) 각(各) 역(驛) 착(著) 2할(割)5푼(分) 감(減)
기타(其他) 역(驛) 착(著) 1할(割)1푼(分) 감(減)
- 6 기 간(期 間) 1930(昭和 5)년 4월 1일부터
1930(昭和 5)년 12월 31일까지
- 7 조 건(條 件) 동지철도선(東支鐵道線) 각(各) 역(驛)과 창춘(長春), 사평가(四平街) 및 단동(安東) 역발(驛發)의 것에 대하여는 철도국장(鐵道局長)이 정(定)한 바에 의(依)함.
- 8 기 사(記 事) 본(本) 운임(運賃)은 조선국유철도 지정운송취급인규칙(朝鮮國有鐵道指定運送取扱人規則) 제17조(條)에 의(依)하여 운임(運賃)의 환급(還給)을 받아야 할 자(者)의 환급운임계산액(還給運賃計算額)에 가산(加算)함으로 함.